

산학협력단 검수지침 개정사항

R&D전략팀

가. 개정사유

- 감사팀 직제가 폐지되어 검수 업무가 R&D전략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- 연구책임자가 직접 검수하는 물품·용역에 대한 검수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2조 문구정비: 다음의 각 호 → 다음 각 호
- 제5조 문구정비: 다음의 각 호의 → 다음 각 호의
- 제5조 수정: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직접 검수 절차 내용 추가
- 제6조 수정: 감사팀 → R&D전략팀
- 제12조 문구정비: 다음의 각 호 → 다음 각 호

다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1.~3. (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현행과 같음)	자구수정
제5조(검수대상의 제외)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의 확인으로 검수를 대신 할 수 있다. 1.~2. (생략)	제5조(검수대상의 제외)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가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검수를 대신 할 수 있다. 1.~2. (현행과 같음)	자구수정 내용수정
제6조(검수부서) 검수에 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 본부 감사팀 에서 주관한다.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에서 진행되는 물품과 용역의 검수는 의료기술협력단 연구진흥팀에서 주관한다.	제6조(검수부서) 검수에 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 본부 R&D전략팀 에서 주관한다.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에서 진행되는 물품과 용역의 검수는 의료기술협력단 연구진흥팀에서 주관한다.	자구수정
제12조(검수거부) ① (생략) ② 검수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관련부서에 즉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.	제12조(검수거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검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관련부서에 즉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.	자구수정

1.~3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	
<u><신 설></u>	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신설